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6
----------	-----

2009년 6월 29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09년 6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경섭 물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조례 제2조1호 중 「수도법 제5조·제5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를 「수도법」 제7조·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1호'로,
- 2) 조례 제2조2호 중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본 개정 조례안은 2009.6.11일 시장이 제출하여 2009.6.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조례 제2조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즉,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전부개정([표]참조)됨에 따라, 동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인용 조문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법령 명	개정 구분	개정 일자	시행 일자	인용 조문 개정 내용
수도법	전부 개정	2007.4.11	2007.4.11	제5조→제7조, 제58조→제78조
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	2007.9.6	2007.9.6	제37조제2항제2호 →제67조제2항제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전부 개정	2007.12.31	2008.8.4	제5조→제12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6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09. 3.26~4.1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7조·제7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u>한강수계</u> <u>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탈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탈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수원</u>"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 · 제5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u>수질개선사업</u>"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수원</u>"이란 「수도법」 제7조 ·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u>수질개선사업</u>"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p>제3조(관리·운영) 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p>	<p>제3조(관리·운영)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탈별회계(이하 "회계"라 한</p>

	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u>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4. 차입금 5. <u>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1.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u>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4. 차입금 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제5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u>소요되는 비용</u>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u>소요되는 비용</u> 3. 주민지원사업에 <u>소요되는 비용</u>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u>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u> 이 정하는 사업에 <u>소요되는 비용</u>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u>드는 비용</u>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u>드는 비용</u> 3. 주민지원사업에 <u>드는 비용</u>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 <u>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u> 」이 정하는 사업에 <u>드는 비용</u>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u>예에 의한다.</u>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u>예에 따른다.</u>